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03
----------	------

2016년 3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6년 3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가. 제안이유

- 「산불방지 교육·훈련」은 산림보호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의 사전적 예방과 불시 발생한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를 목적으로 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군부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여야 하는 주요 업무임.
- 산불이라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산불방지 교육·훈련」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우리시는 다년간의 산불관련 업무경험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함

나. 주요 내용

1) 운영 개요

- 사 무 명 :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 교육시기 : 연중으로 실시하되, 산불조심기간(봄·가을) 중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2)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7개월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대 상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대표 : 곽주린)
- 사 업 비 : 45백만원(15백만원/년)
- 위탁업무
 - 산불방지와 관련된 교육·훈련
 - ▶ 산불방지 전문교육(6시간/ 담당공무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상)
 - 산불정책, 안전수칙 등 이론교육 2시간, 장비이해 등 실습 4시간
 - ▶ 산불방지 기본교육(3시간/ 산불방지 참여공무원, 군부대 등 대상)
 - 산불정책, 안전수칙 등 이론교육 2시간, 장비이해 등 실습 1시간
 - ▶ 산불방지 예방교육(2시간/ 학생, 유관기관·단체 등)
 - 산불예방법, 산불발생 시 대처법, 산불발생 피해 등 이론교육 2시간
 -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위한 자료 제작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업무
 - ▶ 교육프로그램 개발, 책자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산림보호법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 산림보호법 제35조(산불방지교육)
- 산림보호법 제35조 5항(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 요 성

-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가뭄경보와 겨울철 건조특보가 빈번히 발령되는 가운데 대기의 건조로 산불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서울시 산불발생 추이를 보더라도 '13년 3건, '14년 16건, '15년 19건으로 그 발생빈도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산불 관련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산불예방과 효율적 진화관련 교육·훈련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산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서울

- 서울은 낙산, 인왕산, 남산, 북악산의 내사산(內四山)과 용마산, 덕양산, 관악산, 북한산의 외사산(外四山)에 둘러싸여 있는 산림과 밀접한 도시임.
- 서울시 605 km^2 면적 중 임야의 면적은 157.19 km^2 (25.97%)으로 주로 외곽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러한 산림의 관리와 함께 산불관련 업무는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하절기(6월~9월)에 강우가 집중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강수량이 급감하여 건조한 기후를 보이는데 특히, 봄, 가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강도 높은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강수량을 살펴보면 2010년은 2,043.5 mm 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연강수량이 808.9 mm 로 강수량이 급감하여 건조한 기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산림청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서울시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건 0.1ha, 2014년 19건 1.01ha, 2015년 21건 1.61ha 그리고 2016년 2월까지 4건, 0.33ha의 산림이 산불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음.
-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서울의 산불발생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서울은 산림이 도심지와 인접되어 있고,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역도 다수 분포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한다면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므로 산불방지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전문적 산불방지교육의 필요성**

-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의해 건조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둘레길 등 산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어 산불에 대한 예방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 현재 산불방지 교육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에는 전체 교육예산 1,500만원의 40%인 600만원을 지원받은 상태로 「산림보호법」 제35조를 근거로 산불 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에 대한 교육과 시민 홍보 및 교육 등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산불방지 교육은 피교육자의 업무와 능력에 따라 교육내용과 목표를 달리 하여야 하므로 **전문교육**은 담당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산불정책과 안전수칙 등 실무에 사용될 이론교육과 실습을 강화하여 교육하고 **기본교육**은 공무원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산불정책, 안전수칙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 **예방교육**은 학생과 단체를 대상으로 산불예방법, 산불 발생시 대처법, 산불방지 피해 등 업무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을 통한 산불방지 교육 시행**

-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청 인가 특수법인으로 산불방지 관련 교육·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 본 기관은 2015년 1월 설립된 이후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위탁 또는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업무 경험이 많고 교육을 이수한 강사진으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기관임.
- 또한 「산림보호법」 제35조에는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 산불방지 교육의 민간위탁은 가능한 사항임. 하지만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와 같이 산림청인가 특수법인에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한 산불방지 교육업무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수의협약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특히 산림관계법에서는 산림청인가 특수법인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비를 지원받은 이상 이들 특수법인에 해당사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들 특수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도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감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직영 운영의 경우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매회 강사섭외 등으로 행정력을 소모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위해서는 매년 진화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03
----------	------

제출년월일 : 2016년 2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산불방지 교육·훈련」은 산림보호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의 사전적 예방과 불시 발생한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를 목적으로 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군부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여야 하는 주요 업무임.
- 나. 산불이라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산불방지 교육·훈련」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우리시는 다년간의 산불관련 업무경험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개요

- 사무명 : 산불방지 교육·훈련 민간위탁
- 교육시기 : 연중으로 실시하되, 산불조심기간(봄·가을) 중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7개월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대 상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대표 : 곽주린)
- 사 업 비 : 45백만원(15백만원/년)
- 위탁업무
 - 산불방지와 관련된 교육·훈련
 - ▶ 산불방지 전문교육(6시간/ 담당공무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상)
 - 산불정책, 안전수칙 등 이론교육 2시간, 장비이해 등 실습 4시간
 - ▶ 산불방지 기본교육(3시간/ 산불방지 참여공무원, 군부대 등 대상)
 - 산불정책, 안전수칙 등 이론교육 2시간, 장비이해 등 실습 1시간
 - ▶ 산불방지 예방교육(2시간/ 학생, 유관기관 · 단체 등)
 - 산불예방법, 산불발생 시 대처법, 산불발생 피해 등 이론교육 2시간
 -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위한 자료 제작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업무
 - ▶ 교육프로그램 개발, 책자 등 교육자료 제작 · 배포 등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산림보호법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 산림보호법 제35조(산불방지교육)
 - 산림보호법 제35조 5항(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 요 성
 -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가뭄경보와 겨울철 건조 특보가 빈번히 발령되는 가운데 대기의 건조로 산불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서울시 산불발생 추이를 보더라도 '13년 3건, '14년 16건, '15년 19건으로 그 발생빈도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산불관련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산불예방과 효율적 진화관련 교육·훈련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산불방지 교육)

-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
- 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민간위탁금(15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곽동훈 (☎ 2133-2162)